

2015년 건강검진 시행 계획

□ 관 련

-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(건강검진)
-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(건강진단)
- 단체협약 제72조(건강진단) 사업장별 노사 협의후 자율적 시행

□ 목 적

- 매년 정기검진을 통한 건강체크 및 질병 예방으로 직원 건강수준 제고
- 직원 건강 유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업무 효율성 증대

□ 개 요

- 대상 : 상무보 이하 전 직원 및 배우자(직원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배우자)
- 2015.1.2 기준 재직자 중 2015.4.1 현재 재직자 限 (청경 및 계약직 포함, 파견계약직 제외)
- 기간 : 4.6(월) ~ 11.30(월)
- 검진포인트 지급 : 4.6(월)
- 지급기준

유형	대상인원	출생년도	검진단가	비고
사원(A형)	만 50세 이상	1965.12.31 이전	30만원	복지Point 선지급 후 개인별 결제
사원(B형)	만 35세 ~ 50세 미만	1966.1.1 ~ 1980.12.31	20만원	
사원(C형)	만 35세 미만	1981.1.1 이후	15만원	
배우자(D형)	전 연령	-	15만원	

※ 사후정산 대상 : 일반계약직, 프로젝트 계약직, 전입(재적) 직원

○ 세부일정

주요 내용	일정	비고
• 계약 검진기관 시스템 입력	3.25 ~ 4.1	기관담당자
• 2015년 건강검진 전사공지	4.1	본사담당자
• 건강검진 포인트 지급(배우자 포함)	4.6	개인별
• 건강검진 신청 (검진기관, 일자, 유형, 선택검진항목)	4.6 ~ 4.15	개인별
• 건강검진 시행 (검진 당일 개인별 직접결제)	4.27 ~ 11.30	개인별
• 검진현황 본사 제출 및 검진결과표(사후관리소견서) 관리	12월 중	기관담당자

※ 기관별 계약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

□ 2015년 주요사항

- 특수검진 병행 시행(추후 별도문서 발송)
 - 대상 : 밀폐공간(맨홀) 작업자, 야간(교대) 근무자
 - 특수검진 대상자는 특수검진 가능 병원 선택(희망 시 일반검진기관 선택가능)
- 검진신청 알리미 서비스
 - 신청기간 이외 신청 시 신청자 리스트를 다음날 담당자에게 메일로 발송
 - 검진신청 누락 최소화 및 담당자 업무부담 해소
- 검진서비스 만족도 조사
 - 건강검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검진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(11월)
 - 만족도 조사결과 하위 30% 기관에 대해 '16년 검진제외 가능(계약서 명시)
- 전 직원 스트레스 검사(필수 참여)
 - '15년 건강검진과 병행하여 스트레스 검사 시행
 - 개인별 건강검진 신청 후 팝업을 통한 스트레스 검사 안내

□ 세부 추진사항

- 검진기관 선정
 - 공단 지정 검진기관 중 5대암(위암·간암·대장암·유방암·자궁경부암) 이상 검진가능 기관 선정 필수(부문/실/본부 단위 검진병원 계약)
 - 건강검진 서비스 품질, 직원 검진만족도를 최우선으로 고려
 - ※ 기관별 자체 만족도 평가를 통한 검진기관 수 조절 가능(노사협의 필수)
- 계약 시 필수사항
 - 건강검진 표준계약을 활용하여 업체 특성에 맞게 적의 시행
 - 직원가족 및 퇴직사우도 직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검진 가능하도록 계약(검진비용은 직원가족 및 퇴직사우가 직접 결제)
 - 검진기관은 반드시 검진수가 기준 15만원 이상의 검진 시행(계약서 명시)
- 검진항목
 - 검진 유형 : A형(30만원) / B형(20만원) / C형,D형(15만원)
 - 검진 기본항목은 최소화하고 선택항목은 최대화
 - 뇌심혈관질환(심근경색·뇌졸중·협심증 등)관련 검진 항목은 가능한 확대

○ **검진대상자 관리**

- 건강검진 독려방안 강화
 - 2015년 건강검진 미 검진자는 '16년도 검진 시 검진포인트 미지급
 - 미 검진자 소속 기관은 본사 주관 산업안전보건 특별점검 시행
- 검진제외자
 - 2015.1.2 이후 입사자 중 신체검사를 받은 직원
 - 장기요양, 암 환자, 해외파견, 임신 및 출산 등(추후 증빙서류 제출 필수)
- 타 기관 전출자
 - 신청방법 : 소속 담당자에게 문의 후 담당자가 타 기관 검진신청 요청
 - 결과관리 : 검진 전 전출 → 전입기관 / 검진 후 전출 → 전출기관

□ **사후관리**

○ **관리책임자**

- 검진결과표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파악
- 2차 검진(법적 필수 시행) 대상자에 대한 생활습관 개선 등 보건지도 필수

○ **기관 검진담당자**

- 검진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의거 사업장 5년간 보관
- 기관별 검진현황은 ERP 시스템 관리 및 경영지원실 보고(추후 양식 안내)

○ **검진기관 평가 및 관리**

- 기관 검진담당자 대상 검진기관 업무 협조도 등 검진기관 평가 실시
- 검진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하위 30%기관은 '16년 검진기관 선정 시 제외

※ **건강검진 미 실시 시 과태료 부과**

- 과태료 부과 기준(산업안전보건법)

*위반횟수에 따라 부과

구분	위반행위	법조항	과태료 금액 (만원)			비고
			1차	2차	3차	
사업주	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	제72조 제3항 제5호	5	10	15	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
근로자	법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	제72조 제5항 제2호	5	10	15	

- 사업주의 적극적인 노력 여부를 확인하여 처분대상 결정

[사례1] 근로자 ○○○에게 1차 건강진단을 받도록 개별 안내한 사실이 없거나, 1회 개별안내 후 실시 예정일자에 미 실시 하였음에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

☞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주 처벌

[사례2] 근로자 ○○○에게 제1차 건강진단을 받도록 사업주가 개별 안내하고, 제1차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자에 실시하지 아니하여 재차 안내하였음에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가 확인(서류 또는 진술 등)된 경우

☞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, 근로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미 실시한 경우로 보아 근로자 ○○○을 처벌

[사례3]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인 근로자 ○○○에게 제2차 건강진단에 대하여 [사례1] 또는 [사례2]의 경우

☞ 제2차 건강진단에 대하여 [사례1]과 같이 개별안내 등이 소홀한 경우는 사업주를 [사례2]와 같이 2회 이상 개별 안내한 경우는 근로자 ○○○을 처벌